

입법예고 종법령명	대한불교조계종 전법단 운영·관리에 관한 령 개정안		
담 당	포교원 포교부 포교지원팀 (02-2011-1910)	입법예고일	2025년 2월10일 ~ 3월 1일

1. 개정이유 및 취지

○ 중앙종무기관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 변경 및 자구를 수정함.

2. 주요내용

가. 중앙종무기관 조직 개편에 따라 관련 조문을 수정함(제1, 3조, 제4조, 제5조, 제6조, 제7조, 제8조, 제9조, 제10조, 제11조, 제12조).

3.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정안
제1조 (목적) 이 영은 포교법 제29조의8(운영)에 의거 본종 전법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, 본종 포교진흥 및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불기 2564(2020).10.28>	제1조 (목적) 이 영은 포교법 제14조에 의거 본종 전법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, 본종 포교진흥 및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불기 2564(2020).10.28>
제3조 (전법단 임원과 조직) ① 전법단의 운영을 위해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. 1. 총재 2. 삭제 <개정 불기 2564(2020).10.28> 3. 전법단장 4. 분야별 전법단장 <신설 불기 2566(2022).12.14> 5. 사무처장 <개정 불기 2566(2022).12.14> ② 총재는 포교원장을 당연직으로 한다. ③ 삭제 <개정 불기 2564(2020).10.28> ④ 전법단장은 포교원 교무회의 심의를 거쳐 포교원장이 임명하며,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. ⑤ 분야별 전법단장은 각 전법단의 지도법사 중에서 포교원 교무회의 심의를 거쳐 포교원장이 임명하며,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<신설 불기	제3조 (전법단 임원과 조직) ① 전법단의 운영을 위해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. 1. 총재 2. 삭제 <개정 불기 2564(2020).10.28> <u>3. 중앙전법단장</u> 4. 분야별 전법단장 <신설 불기 2566(2022).12.14> 5. 사무처장 <개정 불기 2566(2022).12.14> ② 총재는 <u>총무원장</u> 을 당연직으로 한다. ③ 삭제 <개정 불기 2564(2020).10.28> <u>④ 중앙전법단장은 총무원 포교부장을 당연직으로 한다.</u> ⑤ 분야별 전법단장은 각 전법단의 지도법사 중에서 <u>포교부장의 추천으로 총무원장</u> 이 임명하며,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<신설 불기 2566(2022).12.14>

현행	개정안
<p>2566(2022).12.14></p> <p>⑥ 사무처장은 포교원 포교부장이 담임한다. <개정 불기 2566(2022).12.14></p> <p>⑦ 본조 1항 각호 외에 전법단의 원활한 활동을 돕기 위해 포교원 교무회의 결의로 전법후원단을 조직할 수 있다.</p>	<p>⑥ 사무처장은 포교부장이 담임한다. <개정 불기 2566(2022).12.14></p> <p>⑦ 본조 1항 각호 외에 전법단의 원활한 활동을 돕기 위해 전법후원단을 조직할 수 있다.</p>
<p>제4조 (전법단 구성원의 위촉) ① 지도법사단은 본종 승려로 구축계를 수지하고 특정분야에서 실제 포교활동에 임하고 있는 자로서 포교원 교무회의 심사를 거쳐 포교원장이 위촉한다. <개정 불기 2564(2020).10.28></p> <p>② 전법지원단 구성원은 본종이 발급한 각종 포교자격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포교원 교무회의 심사를 거쳐 포교원장이 위촉한다. <개정 불기 2566(2022).12.14></p> <p>③ 지도법사단 또는 전법지원단의 구성원이 되려고 하는 자는 포교원에서 정한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불기 2564(2020).10.28></p>	<p>제4조 (전법단 구성원의 위촉) ① 지도법사단은 본종 승려로 구축계를 수지하고 특정분야에서 실제 포교활동에 임하고 있는 자로서 포교부장의 추천으로 총무원장이 위촉한다. <개정 불기 2564(2020).10.28></p> <p>② 전법지원단 구성원은 본종이 발급한 각종 포교자격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포교부장의 추천으로 총무원장이 위촉한다. <개정 불기 2566(2022).12.14></p> <p>③ 지도법사단 또는 전법지원단의 구성원이 되려고 하는 자는 총무원 포교부에서 정한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불기 2564(2020).10.28></p>
<p>제4조의2 (전법단 구성원의 위촉 절차) ① 지도법사는 다음 각호에 따라 위촉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분야별 지도법사 위촉은 매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. 2. 분야별 지도법사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. 3. 지도법사는 분야별로 중복 위촉할 수 있다. 4. 위촉 기간이 만료된 지도법사에 대해, 소속 분야 전법단장은 활동보고서를 검토하여 포교원에 재위촉을 요청할 수 있다. 5. 지도법사는 매년 12월에 활동보고서를 소속 전법단으로 제출해야하며, 각 분야별 전법단장은 이를 취합하여 활동명단과 함께 포교원에 익년 2월 15일까지 제출한다. <p>[본조신설 불기 2566(2022).12.14]</p>	<p>제4조의2 (전법단 구성원의 위촉 절차) ① 지도법사는 다음 각호에 따라 위촉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분야별 지도법사 위촉은 매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. 2. 분야별 지도법사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. 3. 지도법사는 분야별로 중복 위촉할 수 있다. 4. 위촉 기간이 만료된 지도법사에 대해, 소속 분야별 전법단장은 활동보고서를 검토하여 총무원 포교부에 재위촉을 요청할 수 있다. 5. 지도법사는 매년 12월에 활동보고서를 소속 전법단으로 제출해야하며, 각 분야별 전법단장은 이를 취합하여 활동명단과 함께 총무원 포교부에 익년 2월 15일까지 제출한다. <p>[본조신설 불기 2566(2022).12.14]</p>
<p>제5조 (전법단 구성원의 해촉) ① 전법단의 구성원으로서 일신상의 사유 또는 중법령에서 정하는 부적격 사유가 있을 시, 포교원 교무회의 심의를 거쳐 총무원장이 해촉한다. <개정 불기 2566(2022).12.14></p>	<p>제5조 (전법단 구성원의 해촉) ① 전법단의 구성원으로서 일신상의 사유 또는 중법령에서 정하는 부적격 사유가 있을 시, 총무원장이 해촉한다. <개정 불기 2566(2022).12.14></p> <p>② 해촉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총무원 포교부에서</p>

현행	개정안
<p>② 해촉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포교원 교무회의에서 정한다. <신설 불기 2566(2022).12.14></p> <p>제6조 (전법단의 기능) ① 삭제<불기 2564(2020).10.28></p> <p>② 전법단은 포교원 교무회의에서 정한 계층별, 직능별 등 세부 분야별 활동을 시행한다.<개정 불기 2564(2020).10.28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삭제<개정 불기 2564(2020).10.28> 2. 삭제<개정 불기 2564(2020).10.28> 3. 삭제<개정 불기 2564(2020).10.28> 4. 삭제<개정 불기 2564(2020).10.28> 5. 삭제<개정 불기 2564(2020).10.28> 6. 삭제<개정 불기 2564(2020).10.28> 7. 삭제<개정 불기 2564(2020).10.28> 8. 삭제<개정 불기 2564(2020).10.28> 9. 삭제<개정 불기 2564(2020).10.28> 10. 삭제<개정 불기 2564(2020).10.28> 11. 삭제<개정 불기 2564(2020).10.28> 12. 삭제<개정 불기 2564(2020).10.28> 	<p>정한다. <신설 불기 2566(2022).12.14></p> <p>제6조 (전법단의 기능) ① 삭제<불기 2564(2020).10.28></p> <p>② 전법단은 총무원 포교부에서 정한 계층별, 직능별 등 세부 분야별 활동을 시행한다.<개정 불기 2564(2020).10.28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삭제<개정 불기 2564(2020).10.28> 2. 삭제<개정 불기 2564(2020).10.28> 3. 삭제<개정 불기 2564(2020).10.28> 4. 삭제<개정 불기 2564(2020).10.28> 5. 삭제<개정 불기 2564(2020).10.28> 6. 삭제<개정 불기 2564(2020).10.28> 7. 삭제<개정 불기 2564(2020).10.28> 8. 삭제<개정 불기 2564(2020).10.28> 9. 삭제<개정 불기 2564(2020).10.28> 10. 삭제<개정 불기 2564(2020).10.28> 11. 삭제<개정 불기 2564(2020).10.28> 12. 삭제<개정 불기 2564(2020).10.28>
<p>제7조 (전법단의 임무) 전법단의 지도법사단과 전법지원단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다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포교원에서 정한 활동 지침의 준수 2. 당해 분야 포교활동에의 매진 3. 당해 분야 포교활동에 대한 보고서 제출 4. 포교원에서 소집하는 회의 및 교육 연수의 참석 	<p>제7조 (전법단의 임무) 전법단의 지도법사단과 전법지원단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다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총무원 포교부에서 정한 활동 지침의 준수 2. 당해 분야 포교활동에의 매진 3. 당해 분야 포교활동에 대한 보고서 제출 4. 총무원 포교부에서 소집하는 회의 및 교육 연수의 참석
<p>제8조 (전법단에 대한 종단지원등) 포교원은 전법단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종단에서 개발된 각종 교구재 및 프로그램에 대한 우선 지원 2. 종단 예산 수립 시 전법단에서 시행하는 포교사업에 대한 우선 배정 3. 포교원 지침에 따른 포교활동 시 소정의 예산 	<p>제8조 (전법단에 대한 종단지원등) 총무원 포교부는 전법단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종단에서 개발된 각종 교구재 및 프로그램에 대한 우선 지원 2. 종단 예산 수립 시 전법단에서 시행하는 포교사업에 대한 우선 배정 3. 총무원 포교부 지침에 따른 포교활동 시 소정

현행	개정안
<p>지원</p> <p>4. 전법단의 특정 포교사업 시행시 유관 사찰 등 각급 종무기관에의 협조 공문 시행</p>	<p>의 예산 지원</p> <p>4. 전법단의 특정 포교사업 시행시 유관 사찰 등 각급 종무기관에의 협조 공문 시행</p>
<p>제9조 (전법단의 예산) 전법단의 예산은 포교원 예산에 계상한다.</p>	<p>제9조 (전법단의 예산) 전법단의 예산은 총무원 포교부 예산에 계상한다.</p>
<p>제10조 (전법단 사무) ① 전법단의 업무는 포교원 포교국에서 담임한다.</p> <p>② 전법단은 총재의 승인으로 별도 장소에 사무처를 둘 수 있다.</p> <p>③ 분야별 전법단은 원활한 업무를 위해 사무국을 둘 수 있다. <신설 불기 2566(2022).12.14></p>	<p>제10조 (전법단 사무) ① 전법단의 업무는 총무원 포교부에서 담임한다.</p> <p>② 전법단은 총재의 승인으로 별도 장소에 사무처를 둘 수 있다.</p> <p>③ 분야별 전법단은 원활한 업무를 위해 사무국을 둘 수 있다. <신설 불기 2566(2022).12.14></p>
<p>제11조 (전법단 지도법사 지원) ① 전법단 지도법사 중 제3급 승가고시 미이수자가 2년 이상 성실히 전법단 활동을 한 경우, 포교원은 그 활동에 대한 심의 결과를 교육원에 이첩하며, 교육원은 「승려연수교육에 관한 령」 제6조에 의거 연수교육 이수로 인정할 수 있다. <개정 불기 2564(2020).10.28></p>	<p>제11조 (전법단 지도법사 지원) ① 전법단 지도법사 중 제3급 승가고시 미이수자가 2년 이상 성실히 전법단 활동을 한 경우, 총무원 포교부는 그 활동에 대한 심의 결과를 교육원에 이첩하며, 총무원 교육부는 「승려연수교육에 관한 령」 제6조에 의거 연수교육 이수로 인정할 수 있다. <개정 불기 2564(2020).10.28></p>
<p>제12조 (시행세칙) 이 영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포교원 규칙으로 정한다.</p>	<p>제12조 (시행세칙) 이 영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무원 포교부 규칙으로 정한다.</p>
<p><신설></p>	<p>부칙 <불기 2569(2025).00.00 개정></p> <p>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</p>